

○ 양 천 구 의 회

○ 제298회 임 시 회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02. 16.

복지건설위원회

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827호	검토	전문위원 신훈
의안명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제출일자	2023. 02. 02.
소관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자	2023. 02. 03.

1

제안이유

-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 운영)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조례」 제5조(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등)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상담, 청소년안전망구축, 위기 청소년상담·보호·긴급구조·자립지원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써 청소년관련 다수의 경험을 소유한 역량 있는 민간 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향상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 양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나. 위탁사무내용 : 양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리·운영

○ 주요사업

- 청소년 상담 및 또래관계.사회성.인터넷중독 등 예방교육사업
-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통합서비스 제공 등

다.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수	비고
양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53 2층	201.4㎡ (전용면적)	7명	

라. 위탁기간 : 3년(2023. 7. 1. ~ 2026. 6. 30.)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바. 소요예산 : 금454,251천원(2023년)

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2023년 제1차 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기획예산과-1148(2023.1.27.)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제42조의2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5조(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등)

5

검토의견

□ 동의안 제출 배경

-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고 함)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역량 있는 민간법인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 동의안 내용 및 법적 요건 검토

- 센터는 「청소년복지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29조에 따라 2013년부터 구립으로 위탁운영 중이며, 2023년 6. 30일로 위탁만료 예정으로 센터의 위탁 연혁은 【표 1】과 같음.

【표 1】 센터의 위탁 연혁

연차	사 업 기 간	위탁기관
1차	2013. 7. 1. ~ 2016. 6. 30.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2차	2016. 7. 1. ~ 2018. 6. 30.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3차	2018. 7. 1. ~ 2021. 6. 30.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4차	2021. 7. 1. ~ 2023. 6. 30.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센터는 법 제29조,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에 의해 청소년단체에 공개모집에 따라 위탁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살펴보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민간위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 및 보고를 위해 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① 민간위탁 사무명 ②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③ 민간위탁 사무내용 ④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⑤ 민간위탁 기간 ⑥ 민간위탁 소요예산 ⑦ 수탁자 선정방식 ⑧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 제1차 민간위탁적정성 결과(기획예산과-1148, 2023.1.27)에 따라 문제없다고 사료됨.

-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센터의 관리·운영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상담 및 또래관계·사회성, 복지서비스제공 등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의 주요현황은 【표 2】과 같음.

참고로 본 동의안이 통과 시 공개 모집을 통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할 예정임.

【표 2】 주요현황

시 설 명	양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 재 지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53 2층		
시설규모	사무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통합지원실, 교육실 등(전용면적 201.4㎡)		
이용인원	총1,200명(연 이용누계)	종사자수	7명
소요예산 (2023년)	금454,251천원(국비 50,051천원, 시비 78,273천원, 구비 325,927천원)		

□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지역 내 활동 가능한 자원을 연계하여 청소년안전망 구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에 기여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취지 및 필요성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1. 29.]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수탁자와의 협약에 의한다.

②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청소년시설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을 준용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등

제5조(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등)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② 재위탁 시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 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 5년 이상인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재위탁 시 매회 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 및 보고를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소요예산
7. 수탁자 선정방식
8.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16조제4항의 경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